

# 제품안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중국에서 리본타입 LED조명을 수입하려 하는데, 8mm 폭의 리본형태이며 5M 단위로 포장되어 있고 디스플레이용 가구에 효과를 주기위해 쓰이며 1M 정도로 사용합니다. 5M의 경우 2.5A, 1M의 0.5A 어댑터를 사용하고 발열이나 회전체는 없는데 해당제품이 안전인증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리본타입 LED소자는 LED조명기구를 만들 수 있는 부품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품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 제품을 이용하여 만든 LED조명기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목이며 LED조명기구에 부품으로 사용되는 컨버터도 안전인증대상품목입니다. 따라서 LED소자로 만든 LED조명기구를 안전인증 받으려면 내부에 사용되는 컨버터(전원공급장치)도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Q** 아파트 세대내 보일러 난방 제어용 온도조절기 세트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밸브 제어기, 멀티온도조절기, 각방온도조절기, 모터구동기로 구성되며 정격은 220V, 10W 이하입니다.

**A** 보일러 난방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온도조절기 세트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1개의 도체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고무절연케이블에 따라 개별로 인증 받은 전원케이블 3개를 실리콘 고무절연 유리섬유 편조튜브(규격: 300V, 200℃)로 씌워서 전자호브 전원케이블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A** 안전인증을 받은 3개의 전원케이블(K60245-3 구조가 1심 도체)을 섬유편조튜브로 감싸 전자호브의 케이블로 사용할 경우 동 전선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유아 양말이나 속옷 잠옷 등 KC인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유아용양말, 속옷, 잠옷'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유아용 섬유제품'에 해당됩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36개월 이하의 영유아용의 의류 및 섬유제품을 말합니다. 해당제품의 관련기준 및 신고절차 등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서 [제품안전→생활용품→자율안전확인→유아용섬유제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화장실 냄새제거용 액체가 인증대상인가요?**

**A** 화장실 냄새제거용 액체가 일반 가정에서 바닥, 욕조, 타일 등의 물체를 세정할 용도로 사용되는 액체 상태의 화학제품에 해당된다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공산품인 생활화학가정용품(제1부 세정제)에 해당되며, 건물의 실내, 자동차 안 등 일정한 공간 내에서 또는 섬유제품과 같은 특정 제품의 악취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생활화학가정용품(제5부 탈취제)에 해당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제조자 및 수입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부직포 원단으로 만든 1회용 방진복, 세균 멸균복, 방역복 제품에 대한 면제조항이 있는지, 표시사항 제1항~제5항까지의 내용이 한글로 기재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제품의 용도가 방진복, 세균 멸균복, 방역복으로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되며, 판매하기 전에 안전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은 안전품질표시의 기준 제2조제4항에 따라 한글로 표시하고,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표기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제품안전 관련 답변사항을 정리하여 게재한 것으로 협회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각종 증빙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